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경과
 - 2022. 5. 9. ~ 6. 26.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총21개국 28명)
 - 2022. 8. 22.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28명 중 18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8명(남 12명, 여 6명)

○ 국가 및 지역 : 16개(※ 가나다순)

나이지리아	1	네팔	1	뉴질랜드	1	대만	2
독일	2	몽골	1	미국	1	방글라데시	1
벨기에	1	아랍에미리트	1	인도	1	중국	1
키르기스스탄	1	타지키스탄	1	파키스탄	1	프랑스	1

다. 향후일정(안)

○ 2022.11월 말~12월 「2022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라. 관련근거

1)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서울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명예시민조례”)에 따라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외국인 18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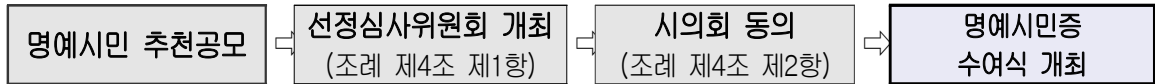
나. 서울시 명예시민 현황

- 서울시는 1958년부터 서울시의 위상 제고, 생활 및 문화활동 공헌, 경제발전, 선진기술 도입 등에 기여한 체류 외국인과 방문 외빈에게 ‘명예시민’ 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모와 추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방식은 추천공모를 통한 ‘일반수여’ 와 외교 사절·귀빈에게 수여하는 ‘특별수여’ 가 있으며, 특별수여의 경우 사전 예측이 어려워 ‘명예시민조례’ 제4조제2항¹⁾의 단서규정에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

근거해 시의회 동의 없이 수여하고 있음.

<명예시민(일반수여) 선정 절차>



- 최근에는 2019년 34명, 2020년 21명, 2021년 13명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으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0개국 894명의 외국인이 명예시민증을 받음[참고자료1].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 ‘심사위원회’는 공공단체, 사회대표,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28명을 대상으로 시정공로와 공적사항, 거주요건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공적과 시정 연관성이 인정된 18명을 명예시민으로 최종 선정함(8월 22일).
- 후보자 중에는 11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무료 영어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에 공헌하거나 서울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명예시민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²⁾을 모두 갖추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명예시민으로서의

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적합성이 인정됨.

- 다만,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3만 610명으로, 선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명예시민 신청자가 28명에 그친 것은 현저히 낮은 실적으로 보임(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 2/4분기).
- 이는 후보자 추천이 주로 대사관, 국제기구, 글로벌센터, 자치구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의존하고 있어 신분이 확실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사관 직원,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소속 임직원 등에 제한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명예시민에게는 행정상 혜택 제공과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 위촉, 행사초청 등으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³⁾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명예시민은 서울국제경제자문단과 외국인투자자문단, 외국인주민회의 등 3개 위원회, 18명에 그치고 있는 등 시정참여 기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3)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 활동 명예시민 현황>

연번	수여 연도	성명	직위	시정참여 내용(위촉연도)	비고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 서울시외국인투자자문단(FIAC)]					
1	2001	Michael Breen (마이클 브린)	Insight Communications 대표	FIAC (2009)	
2	2004	Huang De(황덕)	중국은행 한국대표	FIAC (2011)	
3	2006	David Pierre Jalicon (데이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대표 DPJ 파트너스 대표	FIAC (2010)	
4	2010	Roland Villinger (롤랜드 빌링어)	Mckinsey & Company 시니어 파트너	SIBAC (2012)	SIBAC 자문역
5	2014	Christopher Forbes (크리스토퍼 포브스)	Forbes 부회장	SIBAC (2001)	
6	2014	Rudolph A.Schlais (루돌프 슬레이스)	ASL 자동차 과학 기술(상해) 회장	SIBAC (2001)	
7	2014	Jeffrey D. Jones (제프리 존스)	김&장 법률회사 변호사 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SIBAC (2001) FIAC (2011)	SIBAC 자문역
8	2014	Bradley K. Buckwalter (브래드리 벅월터)	Tyco Korea 대표	FIAC (2014)	
9	2015	Nobuyuki Koga (노부유키 고가)	노무라 홀딩스 및 노무라증권 명예이사	SIBAC (2004)	사임 (2022)
10	2015	에릭 호프만 (Eric Hoffman)	AON 코리아 부회장	FIAC 위원장 (2008)	
11	2016	리처드 스미스 (Richard M. Smith)	Pinkerton 재단 회장 겸 CEO	SIBAC (2008)	
12	2016	피터 잭 (Peter Zec)	Red Dot Design Award 회장	SIBAC (2007), 부의장(2018)	
13	2017	롤랜드 부시 (Roland Busch)	Siemens 회장	SIBAC 위원(2011), 부의장(2016, 2020(연임))	
14	2019	장 루이 쇼사드 (Jean-Louis Chaussade)	前 수에즈 이사회 의장	SIBAC 위원(2011), 부의장(2018)	
15	2020	발라카 니야지 (Balaka Niyazee)	P&G 대표	FIAC (2018)	
[서울시외국인주민회의]					
16	2016	난시 모니카 (Nancy Monica Perales)	스페인어 재능기부 교사	서울시외국인주민회의 (제2~3기, 2019~)	
17	2020	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Muhamad Khalid Bin Ismail)	(주)엠케이에스글로벌 대표이사	서울시외국인주민회의 (제3기, 2021~)	
18	2021	보키예프 아흐로로존 (Boqiev Ahrorojon)	(주)서중물류 해외법인관리팀 매니저	서울시외국인주민회의 (제3기, 2021~)	

- 서울시의 국제교류 증진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명예시민 후보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확대와 명예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으로 명예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5

[참고자료 1]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연도별

('22.8.26.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특별수여)	시정유공 (일반수여)	국제대회 참석 등 ('58-'90년 동안 한시적 수여)
총 계	894	180	544	170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69	39
명예시민증(소계) (1973~)	758	152	475	131
1973~1980	155	6	19	130
1981~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10	22	-
2019	34	15	19	-
2020	21	2	19	-
2021	13	4	9	-
2022(진행중)	3	3	-	-

※ 국제회의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인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지역별 : 100개 국가(지역) 894명

('22.8.26. 기준, 단위: 명)

대륙	국적		계 (단위: 명)	성별		대륙	국적		계 (단위:명)	성별	
				남	여					남	여
아시아 (21개국) 223명	1	네팔	11	10	1	유럽 (32개국) 273명	1	그리스	9	7	2
	2	대만	12	12	0		2	네덜란드	11	7	4
	3	말레이시아	5	4	1		3	노르웨이	5	3	2
	4	몽골	8	6	2		4	덴마크	9	7	2
	5	방글라데시	2	1	1		5	독일	49	42	7
	6	베트남	9	8	1		6	러시아	14	11	3
	7	스리랑카	3	1	2		7	루마니아	3	2	1
	8	싱가포르	8	7	1		8	몰도바	1	0	1
	9	우즈베키스탄	8	5	3		9	몰타	1	0	1
	10	인도	6	4	2		10	벨기에	16	9	7
	11	인도네시아	8	6	2		11	벨라루스	1	1	0
	12	일본	45	39	6		12	불가리아	2	2	0
	13	중국	45	39	6		13	스웨덴	7	6	1
	14	카자흐스탄	10	9	1		14	스위스	4	3	1
	15	캄보디아	1	1	0		15	스코틀랜드	1	0	1
	16	키르기스스탄	3	2	1		16	스페인	11	7	4
	17	타히티	1	0	1		17	슬로바키아	1	1	0
	18	타지키스탄	1	1	0		18	아이슬란드	1	0	1
	19	태국	17	16	1		19	아일랜드	6	5	1
	20	파키스탄	5	4	1		20	아제르바이잔	1	1	0
	21	필리핀	15	12	3		21	에스토니아	2	1	1
중동 (9개국) 25명	1	사우디아라비아	7	7	0		22	영국	31	21	10
	2	아랍에미리트	3	3	0		23	오스트리아	6	5	1
	3	알제리	2	1	1		24	우크라이나	2	2	0
	4	오만	1	1	0		25	이탈리아	15	11	4
	5	요르단	2	2	0		26	조지아	2	2	0
	6	이라크	3	3	0		27	체코	4	3	1
	7	이란	2	2	0		28	터키	14	12	2
	8	이스라엘	3	2	1		29	폴란드	6	4	2
	9	이집트	2	1	1		30	프랑스	28	16	12
중남미 (21개국) 80명	1	과테말라	2	1	1		31	핀란드	4	3	1
	2	도미니카	2	1	1		32	헝가리	6	6	0
	3	멕시코	15	12	3	북미 (2개국) 226명	1	미국	205	162	43
	4	바하마	1	0	1		2	캐나다	21	15	6
	5	베네수엘라	2	0	2	아프리카 (12개국) 43명	1	가나	2	2	0
	6	벨리즈	1	0	1		2	나이지리아	6	6	0
	7	볼리비아	2	0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6	6	0
	8	브라질	8	6	2		4	레소토	1	1	0
	9	아르헨티나	4	2	2		5	세네갈	2	2	0
	10	에콰도르	1	0	1		6	수단	11	11	0
	11	엘살바도르	1	1	0		7	앙골라	3	2	1
	12	온두라스	2	1	1		8	에티오피아	4	4	0
	13	우루과이	1	0	1		9	차드	1	1	0
	14	칠레	6	5	1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5	코스타리카	6	4	2		11	콩고	3	3	0
	16	콜롬비아	11	8	3		12	탄자니아	2	2	0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오세아니아 (3개국) 24명	1	뉴질랜드	10	9	1
	18	파나마	1	0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19	파라과이	1	0	1		3	호주	13	8	5
	20	페루	11	9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참고자료 2] 조례 내용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주요내용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그 밖에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